

감사 보

제 목	기금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전입금 예산 편성 부칙 정
소관 청	환경부
관계 기관	환경부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세정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소관 부처(기금 관리주체)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조정하면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전입금(이하 “기금 전입금”이라 한다)을 각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편성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제2부 제2편 II-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에 따르면 기금 소관 부처에서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요구를 최소화하고 여유자금 등 자체수입을 우선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각 기금 소관 부처가 작성·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각 기금 소관 부처로부터 기금별 수익구조 변동 현황, 변동 사유 및 활용 가능한 여유자금 규모 등을 제출받아 기금별 수입 및 여유자금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여유자금 운용수입 등 기금 자체수입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소관 부처가 요구한 기금 전입금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부담금 수입 등 자체수입이 증가하거나 당초 계획 보다 지출액이 적어 여유자금이 누적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3개 기금¹⁾에 대하여 위 기금들의 활용 가능한 여유자금 규모 및 수익구조 변동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매년 유사한 수준의 기금 전입금(2012년부터 2015년 까지 총 1,329억 원)을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편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경우

환경부에서 2011년 석면피해구제기금²⁾ 신설 당시 석면피해구제지원금(이하 “석면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위해 연평균 150억 원 상당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 매년 30억 원 상당을 전입받아 기금을 조성 하는 것으로 계획(나머지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통해 마련)하였다.

그러나 신설 당시 계획했던 석면지원금 지급대상(2011~2015년간 구제 대상은 3,357명)보다 실제 지금 대상(같은 기간 지금 대상은 1,791명)이 적어 [표 10]과 같이 최근 3년간 연 평균 115억 원의 사업비만 위 기금에서 지출하여 당초 예상했던 세정소요액(150억 원)보다 과소 지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 자체수입 규모가 기금 지출액과 유사하여 기금 전입금을 축소 조정할 여력이 있는 실정이다.

1) 3개 기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3개 기금 가운데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입금 예산을 편성받는 13개 기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원 미만(임금 체권보장기금이나 청산방식을 통해 전입금모를 조정하는 기금(구 국민주택기금, 군인복지기금), 전입금 세외 시적자가 발생하는 기금(군화제보호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궁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과 연계되어 있는 기금(보훈 기금, 가-2)에서 처리) 및 수자차 방식으로 편성하여 여유자금이 고려되고 있는 기금 등 10개 기금은 제외 2) 석면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금여를 지원하는 사업과 석면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장검진, 석면피해 의심지역에 대한 진장영향조사 등 석면피해 예방사업 수행

[표 10]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2012 ~ 2015년도)

(수·관부처)	항목	2012년	2013년	2014년	(단위: 억 원)	
					2012~2014년 평균	2015년
석면피해 구제기금 (환경부)	전입금(A) (전입금 제외) 지출(B) 기금 순수익(A-B) 순자산 여유자금	45 203 158 100 103 248 235	30 173 143 118 55 310 290	30 181 151 128 53 374 343	35 186 151 115 70 311 289	30 157 127 135 22 -

주: 기금 순수익은 기금의 여유자금 회수 및 운용을 제외한 수입과 지출만으로 산정하고 여유자금 운용은 연말잔액 사용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금 신설 당시 계획했던 연 30억 원 상당의 전입금 액을 그대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편성하였다.

위 가)~다)항의 내용과 같이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3개 기금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 증가, 신규 수입원 창출 등 기금 자체수입 증가에 따라 각 기금의 순수익 규모가 기금 전입규모를 넘어서고 있어 기금 전입금 예산편성이 불필요함에도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기금에 대한 예산 전입이 가능할 근거 규정³⁾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위 기금들의 여유자금 변동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금 소관부처에서 요구한 기금 전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편성함으로써 해당 기금의 순조성액 및 여유자금만 증가시키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환경부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필요성, 기금 수익구조 및 여유자금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입금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기금의 세원) 제1항 제1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독립유공자에우 관한 법률」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항 제4호 “정부의 출연금”, 「석면피해 구제법」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항 제7호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